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 (2019. 9. 24.)

2020년도 「지방세연구원」 출연금 출연 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 국 모

2020년도 「지방세연구원」 출연금 출연 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117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9월 9일(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9월 10일(화)

2. 제출사유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.5 (0.015%)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,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,
- 다. 「2020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나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
- 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
- 라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)

4. 검토의견

○ 본 계획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서 “지방자치

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라는 규정에 따라 「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자하여 ‘한국지방세연구원’을 설립·운영 중에 있음.

- ‘한국지방세연구원’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·재정정책의 연구, 발굴은 물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,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중앙집권적인 사업권한과 책임의 지방으로의 이양 등 지방세정의 발전정책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.

- 본 출연금은 전전년도(2018 회계연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(0.015%)인 16,616천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 목적에도 합당하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.

- 다만,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사용 내역이나 사업 성과 등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※ 붙임: 관련 법령

【 관련 법령 】

「지방세 기본법」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세 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